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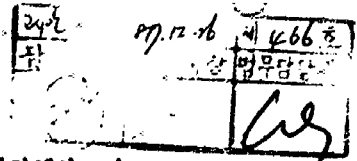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예산 10212-	(전화: 731-6141)	시행상 특별취급									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시 장											
수신처 보존기간		4000											
시행일자													
보조기관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기획관리실장 전걸</td> <td rowspan="3"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현 조 기 관</td> <td rowspan="3"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발무담당관 삼석영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문서통제</td> </tr> <tr> <td>예산담당관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예산총괄계장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기안책임자</td> <td>손동수</td> <td></td> <td>발송인</td> </tr> </table>			기획관리실장 전걸	현 조 기 관	발무담당관 삼석영	문서통제	예산담당관		예산총괄계장		기안책임자	손동수
기획관리실장 전걸	현 조 기 관	발무담당관 삼석영	문서통제										
예산담당관													
예산총괄계장													
기안책임자	손동수		발송인										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발신명의											
제목	198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고시												
(제 1 안) 내부결재	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고시공고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7. 12. 2 6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928호</p> </div>											
1. 1987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1987년도 12													
월 7일자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따로붙임 고시안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													
가. 고시안 : 따로붙임													
(제 2 안)													
수신 : 공보관													
제목 : 시보계제 의뢰													
1. 1987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을 1987년도 12월 7일													

자본 극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따로붙임 고시안과 같이 고시되겠습니다.

따로붙임 : 고시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고시제 호



87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고시

국무총리승인을 얻은 1987년도 제2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 자치법 제1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87. 12. 11

서울특별시장

예산액	내역
1,146,165백만원	.세입: 지방수입3,623백만원 .세출: 내무행정비및전출금 3,623백만원

문서번호	영구·운영구 10.5.3.1.	구	관	장						
보존기간	영구·운영구 10.5.3.1.	전 결								
수신처 보존기간										
시행일자	87. 12.									
보조 기관	부청장 국 과	협 조 기 관	합 동 지 관	문 자 통 제						
기안책임자	도시정미계장		발 송 인							
경유 수신 참조	각 안 참 조		발 송 인							
제 목	도시계획사업(도로) 시행인가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과 심사</td> <td>87.12.22</td> <td>외 2호</td> </tr> <tr> <td>합 당 자</td> <td>7444호</td> <td>1호</td> </tr> </table>			과 심사	87.12.22	외 2호	합 당 자	7444호	1호
과 심사	87.12.22	외 2호								
합 당 자	7444호	1호								
제 1 안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1987. 12. 22</td> <td>제 929</td> </tr> </table>			1987. 12. 22	제 929				
1987. 12. 22	제 929									
수신 : 내부 결재										
제 목 : 같은 건										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8호 (74. 12. 18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										
결정된 강남구 일원동 332번지 일대와, 강남구 도곡동 193번지 일대에 대마										
역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시행인가로 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692호 (87. 11. 20)										
로 공랑공고 안로하고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6조와										
제 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시행인가 하고 관계도서를 이매 관										
개인에게 공랑로 자 합니다. 4553										

1987. 12. 22  
 도시정미계장  
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시행인가  
 서울특별시 공고 제 692호 (87. 11. 20)로 공랑공고 안로하고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6조와 제 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시행인가 하고 관계도서를 이매 관

1505-2512-11월 17호  
85. 9. 9. 200

원부대조필

190mm x 268mm 인쇄용지 2급 60g / m<sup>2</sup>  
사 40-41 1986. 7. 1.

가. 사업시행지 : 1) 강남구 일원동 332 번지 일대

2) 강남구 도곡동 193 번지 일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(도로)

다. 사업의 규모

위 치	규모		모		비 고
	면적 (M)	연장 (M)	시 점	종 점	
일원동 332번지일대	8	56	일원동 332	일원동 400-10	
도곡동 193번지일대	8-10	270	도곡동 180-3	도곡동 193-15	공사구간
			154	도곡동 152-1	보상구간

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청(강남구청장)

마. 사업예정기간 : 착공일 - 87. 12.

준공예정일 - 88. 2. 28.

바. 수용노선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

권리명세 : 별첨 (생략)

사.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요원단

관계인의 주소 성명 : 별첨 (생략)

따로붙임 : 1) 고시문(안) 1부.

2) 관계도면 1건.

제 2 안

원본제조필

2) 광개동면 1건.

제 2 안

수 신 : 서울특별시

참 조 : 시민과장

제 목 : 관인 남인 및 고시번호 부여 요청

1.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(도로)시행인가에 따른 고시번호

부여 및 관인 남인을 요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 지 : 1) 강남구 압원동 332번지 일대

2) 강남구 도곡동 193 번지 일대

나. 건 명 :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시행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 25조

참고붙임 : 1) 고시문 사본 1부.

2) 시행공문 (총무처, 건설부) 2부.

3) 인가증 사본 1부.     급.

제 3 안

수 신 : 총무처 장관

발신 : 서울특별시

참 조 : 법무 담당관

제 목 : 관보 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니다.

가. 객체구분 : 고시

나. 권 명 :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시행 인가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 25조

파도붙임 : 고시본 사본 2부.

제 4 안

수 신 : 건설부 장관

발신 : 서울특별시장

참 조 : 시설계획과장

제 목 : 관 은 건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8 호 ( 74. 12. 18)로 도시계획시설

(도로) 결정된 강남구 일원동 332 번지 일대와, 강남구 도곡동 193번지 일

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시행인가로 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692호로

(87. 11. 20) 공랑공고를 안포하고 파도붙임과 같이 시행인가 하였기에

보고 합니다.

파도붙임 : 1) 고시본 사본 1 부.

2) 도 면 1 부. 끝.

제 5 안

제 목 : 관 은 건

월본대조필

참 조 : ~~시정계획(안)~~

제 목 : 같 은 건

제 4 안 이거시영

따로붙임 : 1) 고시문 사본 1부.

2) 도 면 1부. 끝.

제 6 안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제 목 : 같 은 건

1. 우리구 관내 일원동 332번지 임대와 도곡동 193번지임대영

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시행 인가 약

결기에 동보마니 업무에 참고 할 것.

따로붙임 : 1) 고시문 사본 1부.

2) 도 면 1부. 끝.

받는곳 : 재무과, 서무1,2과, 산업과, 건설관리과, 주택과, 공원녹지과,

도목과, 내국동 (장).

일원동사무소



서울특별시 고 시 제 929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 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8호 (74. 12. 18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된 강남구 일원동 332번지입दै와, 도곡동 193번지 입दै에 대하여 사업 시행 인가조차 서울특별시 공고 제 692호 (87. 11. 20)로 공람공고 완료 하고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6조와 제 6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도로)시행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목과(<sup>510-105</sup>~~515-8972~~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 관계인에게 모입니다.

1987. 12.

서울특별시 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1) 강남구 일원동 332번지 입दै  
2) 강남구 도곡동 193번지 입दै

나. 사업의종류인 명칭 : 도시계획사업(도로)

다. 사업의 규모 :

외 치	규 모			비 고
	폭(M)	연장(M)	시 점	
일원동 332번지입दै	8	56	일원동 332	일원동 400-10

1505-25(2-2) 일(1)을  
85. 9. 9. 승인

190mm×268mm 인쇄용지 2급 60g /㎡  
2. 40-41 1986. 7. 4.



4558

도국동193번지일대	8-10	270	도국동180-3	도국동193-15	공상구간
			도국동 154	도국동152-1	보상구간

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(강남구청장)

마. 사업예정기간 : 착공일 - 87. 1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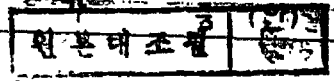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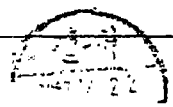
준공예정일 - 88. 2. 28.

바. 수용토는 사용합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

별첨 (생략)

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

주소, 성명 : 별첨 (생략)



1. 사업시행지 : 강남구 일원동 332 번지 일대

1. 사업시행처 : 1) 강남구 일원동 332 번지 일대

2) 강남구 도곡동 193 번지 일대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(도로)

3. 사업의 규모

위치	규모		종류		비고
	폭(M)	면적(M <sup>2</sup> )	시	종	
일원동 332번지 일대	8	56	일원동 332	일원동 400-10	
도곡동 193번지 일대	8-10	270	도곡동 180-3	도곡동 193-15	공상구간
			도곡동 154	도곡동 152-1	보상구간
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청 ( 강남구청장 )

5. 사업예정기간 : 87. 12 - 88. 2. 2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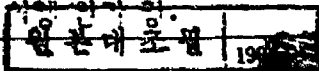
6. 인가번호 : 서울특별시 고시 제 85-9-9-승인

7. 수용되는 사용권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
: 별첨 (생략)

8.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
: 별첨 (생략)

9. 고시된 인가 도서를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 조의

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의



1505-25(2-2)일(1)을  
85. 9. 9. 승인

58mm 인쇄용지 2급 60g / m<sup>2</sup>  
가용까지 1986. 7. 4.

1987.

12.

시  
공  
비  
의  
사  
장

원본대조일

4561